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1. 6. 8.

#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호
----------	-----

제출연월일 : 2021. 6. 8.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개정이유(배경·필요성)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사항(수수료의 부과징수)을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폐기물 봉투 및 처리수수료(납부칩)가격 조항 및 별표 삭제(삭제된 사항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4에 추가)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 다.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 기타사항
  - 가.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다. 규제 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라.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2021. 5. 11. ~ 2021. 5. 31.(20일 이상)
    -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바. 충청남도 소관 실과 : 환경안전관리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납부칩 판매가격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4에 따른다.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환 경 과 장	이 철 희
안	자원순환팀장	이순옥 (746-5531)
자	담 당 자	성유진 (746-5533)

[별표 3]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배출원	배출 방법	수거대상	배출 요령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쓰레기봉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은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li> <li>- 비닐, 병뚜껑, 동물 뼈, 조개껍질, 복어, 티백,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배출</li> </ul>
공동주택	전용 수거 용기	수수료 납부 “칩” 부착	
소형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쓰레기봉투 배출	
	전용 수거 용기	수수료 납부 “칩” 부착	

주) 청소차량 진입 불가 등 전용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소형 음식업소의 경우 읍·동지역 희망업소에 한하여 전용수거용기 방식 적용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생략)</p> <p>② <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u></p> <p>③ <u>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④ ~ ⑥ (생략)</p>	<p>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납부칩 판매가격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4에 따른다.</u></p> <p><u>&lt;삭 제&gt;</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제9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용 량</th> <th>판매가격 (매/원)</th> <th>판매소 판매이익 (매/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음식물류</td> <td>3리터</td> <td>70</td> <td>7</td> <td></td> </tr> <tr> <td>5리터</td> <td>120</td> <td>12</td> <td></td> </tr> <tr> <td>폐기물 전용봉투</td> <td>10리터</td> <td>240</td> <td>24</td> <td></td> </tr> </tbody> </table> <p>※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가격 산출근거(현재 24원/리터)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산출기준과 동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p>		구 분	용 량	판매가격 (매/원)	판매소 판매이익 (매/원)	비 고	음식물류	3리터	70	7		5리터	120	12		폐기물 전용봉투	10리터	240	24		<p>[별표 1] &lt;삭 제&gt;</p>		
구 분	용 량	판매가격 (매/원)	판매소 판매이익 (매/원)	비 고																			
음식물류	3리터	70	7																				
	5리터	120	12																				
폐기물 전용봉투	10리터	240	24																				
<p>[별표 2]</p> <p>납부칩 색상 및 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색 상</th> <th>종 류</th> <th>판매가 격 (매/원)</th> <th>판매소 판매이익 (매/원)</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td> <td>녹색</td> <td>60리터</td> <td>1,440</td> <td>144</td> <td></td> </tr> <tr> <td>빨간색</td> <td>120리터</td> <td>2,880</td> <td>288</td> <td></td> </tr> </tbody> </table> <p>※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칩” 가격 산출근거(현재 24원/리터)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산출기준과 동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 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p>		구 분	색 상	종 류	판매가 격 (매/원)	판매소 판매이익 (매/원)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녹색	60리터	1,440	144		빨간색	120리터	2,880	288		<p>[별표 2] &lt;삭 제&gt;</p>				
구 분	색 상	종 류	판매가 격 (매/원)	판매소 판매이익 (매/원)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녹색	60리터	1,440	144																			
	빨간색	120리터	2,880	288																			

## 현 행

[별표 3]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배출원	배출방법	수거대상	배출요령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리터, 5리터, 10리터)	쓰레기봉투 배출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 (120리터)	수수료 납부 "칩" 부착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소형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3리터, 5리터, 10리터)	쓰레기봉투 배출	- 비닐, 병뚜껑, 동물 뼈, 조개껍질, 복어, 티백,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배출
	전용 수거용기 (60리터, 120리터)	수수료 납부 "칩" 부착	

주) 청소차량 진입 불가 등 전용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소형 음식업소의 경우 읍·동지역 희망업소에 한하여 전용수거용기 방식 적용

## 개 정 안

[별표 3]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배출원	배출방법	수거대상	배출요령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쓰레기봉투 배출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공동주택	전용 수거용기	수수료 납부 "칩" 부착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소형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쓰레기 봉투 배출	- 비닐, 병뚜껑, 동물 뼈, 조개껍질, 복어, 티백,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배출
	전용 수거용기	수수료 납부 "칩" 부착	

주) 청소차량 진입 불가 등 전용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소형 음식업소의 경우 읍·동지역 희망업소에 한하여 전용수거용기 방식 적용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없음

**3. 작성자**

환경과장 이 철 희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쓰레기봉투(일반용, 음식물, 불연성폐기물 마대 포함)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